

<p>○용도지역 변경결정권자: 서울특별시장</p> <hr/> <p>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	<p>제출년월일: 1995. 9. 6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
<p>1. 개 요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40%;">용도지역변경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면적(㎡)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비 고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당 초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일반상업지역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유통상업지역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54,000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자동차검사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도지역변경		면적(㎡)	비 고	당 초	변 경	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	일반상업지역	유통상업지역	54,000	자동차검사장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면적(㎡)	비 고				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		
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	일반상업지역	유통상업지역	54,000	자동차검사장											
<p>2. 상정사유</p> <p>○마포구청 성산동 자동차검사장 부지는 기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당초 목적인 자동차 정비단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왔으나, 토지이용 목적상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코자 함.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○현재의 도시계획사항: 일반상업지역 ○주민 의견청취 결과: 의견없음.</p>	<p>○용도지역 변경결정권자: 서울특별시장</p> <hr/> 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(도시설계)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출년월일: 1995. 9. 6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
<p>1. 개 요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5%;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용도지역변경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용도지구 지정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면적 (㎡)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5%;">비 고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당 초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청담동 47 일대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일반주거지역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준주거지역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도시설계지구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44,300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청담생활권 중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정	면적 (㎡)	비 고	당 초	변 경	청담동 47 일대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도시설계지구	44,300	청담생활권 중심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정	면적 (㎡)				비 고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		
청담동 47 일대	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도시설계지구	44,300	청담생활권 중심										
<p>2. 상정사유</p> <p>○강남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중심의 하나인 청담생활권중심으로서 본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코자 함.</p> <p>3. 참고사항</p> <p>○주민 의견청취 결과: 의견없음. ○용도지역, 용도지구 변경결정권자: 서울특별시장</p>	<p>(도시설계)지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출년월일: 1995. 9. 6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
<p>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</p>															
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															